



<노동시장개혁 이슈 리포트 ⑫>

우리나라 정규직, 얼마나 과보호되고 있나?

- 세계경제포럼(WEF)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26위에 그침. 개별 지표 가운데 노동시장 효율성은 세계 83위, 고용 및 해고관행은 115위로 조사대상 140개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 OECD에서는 회원국들의 고용보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여 고용보호입법지수(EPL)를 발표하고 있음. EPL 지수의 측정은 ① 개별해고(정규직 해고) 규제, ② 임시고용(기간제근로·파견근로)규제, ③ 집단해고 규제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루어지는데, 각국의 노동관련 부처에서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OECD 각국과의 고용보호 수준 비교】

- 우리나라 정규직 고용보호는 OECD 평균과 유사한 수준
 - 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호지수(EPL)는 2.17로 OECD평균 2.29와 유사
- 그러나 정규직 개별해고에 대한 고용보호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정규직 근로자의 개별해고로부터의 고용보호지수(EPL)는 1.63으로 OECD 평균 1.45보다 높은 수준(34개국 중 12위)
- 정규직 개별해고 중 절차상 난이도는 OECD 국가 중 5위
 - 개별해고 중 절차상 난이도는 3.00으로 OECD 평균 2.21보다 높은 수준
 - 특히, 개별해고 통보 실시 지연 정도는 OECD 국가 중 체코, 포르투갈과 함께 1위
- 개별해고 중 사전통보 및 해고보상금 정도는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났으나 퇴직금을 해고보상금으로 인정할 경우 우리나라 정규직의 개별해고에 대한 고용보호는 OECD 국가 중 터키 다음으로 2위임.

- 개별해고 중 해고의 난이도는 OECD 평균보다 높아 34개국 중 8위 수준
 - 특히,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 원직 복직이 항상 보장되는 3개국 중 하나 (한국, 오스트리아, 체코)
- 고용조정 관련 금전적 비용은 144개국 중 22위로 높은 수준
 - OECD EPL에서 반영되지 않은 고용조정의 금전적비용을 측정한 WEF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고용조정 비용은 144개국 중 22위, OECD 국가 중 2위

주요국의 정규직 개별해고 난이도(EPL지수) 비교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캐나다	0.92	0.92	0.92	0.92	0.92	0.92
프랑스	2.34	2.34	2.34	2.47	2.38	2.38
독일	2.58	2.68	2.68	2.68	2.68	2.68
이탈리아	2.76	2.76	2.76	2.76	2.76	2.68
일본	1.70	1.70	1.70	1.70	1.37	1.37
한국	3.04	3.04	2.37	2.37	2.37	2.37
영국	1.10	1.10	1.26	1.26	1.26	1.10
미국	0.26	0.26	0.26	0.26	0.26	0.26
OECD전체	-	-	-	-	2.15	2.04

* 자료 : OECD Stat (<http://stats.oecd.org/>)

- 이를 종합해보면, 우리나라 정규직의 고용보호수준은 OECD의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으며, 특히 미국, 영국, 일본보다는 아주 높음. 특히 우리나라 전체 노조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 정규직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법률적 보호 외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노조에 의해 중층적 보호를 받고 있어 실제적인 보호수준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음.
-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은 고용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을 늘리려는 경향을 갖게 되는바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장치를 완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활력을 높이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참고자료】

WEF,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OECD. The OECD indicators on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2014

변양규, 정규직 고용보호 현황과 시사점, KERI Brief 14-20